



지안손해사정법인

JIAN CLAIM ADJUSTMENT



주소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8 오성빌딩 304호

전화 : 1833-6051 팩스 : 02-6455-6051

담당자 : 손해사정사 정승협(010-9073-0853)

수 입 일 자	2025-05-16	제 출 처	OOO지점 OOO 팀장님
고 객 명	고객님	담 당 자	손해사정사 정승협
질 의 사 항	Q. 재채기하다 팔이 골절된 경우 상해로 인정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손해사정 산출 및 근거

- 기초제공자료

텍스트 질의

- 담보 및 약관

생명보험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해'의 의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 감염병을 말합니다. 손해보험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해'의 의미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인공장기나 부분의치처럼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장치도 포함합니다.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로는 보험대상자/수익자/계약자의 고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식량부족(X53), 물부족(X54), 고의적 자해(X60-X84), 법적 개인 중 법적처형(Y35.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자연의 힘에 노출(X30-39)m 우발적 익사 및 노출(X30-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상해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로는 보험대상자/수익자/계약자의 고의, 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시범/홍행 또는 시운전,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열거책임주의', 손해보험은 '포괄책임주의'입니다.

- 적용여부

골절이라는 진단은 결코 경미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채기 후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 습관성 탈구 및 심한 골다공증 등의 병력사항이 있었는지 청취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발생한 사고가 외래사고이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사고의 사실만으로 보았을 때, 생명보험의 '재해'와 손해보험의 '상해'에서 규정한 '외래성'이 결여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외래성이란 "내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은 재해의 원인 또는 매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사고의 원인이 밖에서 온 것이면 신체의 내부에서 생긴 증상으로 인한 것이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이나 의약품 또는 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불의의 중독 증상은 외부에서 신체 내부로 유입되어 신체 내부로부터 증상이 나타나지만 상해사고로 인정됩니다.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사고의 사실과 일반 정상인의 경우로 대비해보았을 때 사고 발생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외부요인이란 그 외부요인과 발병 또는 질병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외부요인이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극히 경미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간경화를 앓던 사람이 벌레 쏘여 시체검안서상 직접 사인이 '쇼크사', 중간 선행사인은 '간경화'로 확인되는 경우(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2002. 4. 23. 조정번호 제2002-4호 결정)나 간질 증세가 있던 피보험자가 오토바이에 앉아 놀던 중 경찰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달아나다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서울고등법원 1999. 5. 18. 선고1999가합59929판결),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판결)등은 모두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고로서 재해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간혹 기침이나 재채기, 용변을 보는 등 복압이 상승할 때 척추골절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던 사례가 있었으나, 이 경우 심한 골다공증으로 인한 병적골절(M코드)이므로 상해로 구분되지 않고 질병으로 적용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주장하신 사고사실 중 추가될 내용이 있는지, 재채기 후 골절이 이루어진 후발적인 요인이 있었는지를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 다른 사고내용에 관한 조회

재채기 후 골절되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 재채기 후 다른 물체에 부딪치거나 넘어진 사실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기록된 자료를 찾아 첨부하셔야 합니다.

- 1) 119통해 응급실을 내원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구급활동일지'를 발급받아보신 후 사고의 내용을 다시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 2) 병원기록 중 다른 진술내용이 있다면 응급실초진기록지, 초진외래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및 간호기록지 첫장 등을 다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3) 추가적인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 및 주변인 진술이 있다면 인우인확인서를 통해 사고내용을 다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 4) 재채기 후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그 전 다른 사고에 의해 골절된 후 재채기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경우로 판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 2차보험금 예상

- 골절되신 부위와 수술여부, 관절면 손상여부에 따라 180일이 경과된 후 후유장해진단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작성·교부된 손해사정 의견서는 고객과 모집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와는 차이가 있으며 당사에서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회사에서 사정한 손해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 5. 16.

담당손해사정사 정 승 협



[금융감독원 손사 제BD00001378호]

지안손해사정법인

JIAN CLAIM ADJUSTMENT

